

동작구의회공고 제2020-7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월 31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선정 및 구성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그동안 부재했던 규정을 마련하고, 다소 과도했던 규정은 완화하는 등 위원회 구성·운영·심의 과정의 합리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구의회 의원의 위촉 제한 근거규정 신설(안 제4조제3항)
- 나. 위원의 장기 연임 방지를 위한 연임 횟수 단축(안 제4조제5항)
- 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중복 위촉 제한 규정 완화 및 도시계획관련분야 종사자 제한과 예외 규정 신설(안 제4조제6항)
- 라. 기타 용어 수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 [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4, FAX : 820-1474, E-mail : dongsuyeom@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임명 또는” 을 “임명하거나” 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구의회” 라 한다)에서 추천한 2명의 구의회 의원으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한 의원

가. 위촉일 기준 직무 관련 구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을 제외한 그 밖의 의원

나. 위촉일 기준 도시계획 및 건설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의원을 제외한 그 밖의 의원

제4조제4항 중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을 “도시건설국장” 으로 한다.

제4조제5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제5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제6항 중 “2개” 를 “3개” 로, “위원이거나 5개 이상의 다른 위원회(구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에 한함) 위원을 중복하여 활동하는

사람은” 을 “위원으로 중복하여 활동하거나 관내 도시계획관련분야의 종사자인 경우에는” 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모를 통하여 다른 지역 도시계획관련분야 종사자의 위촉이 곤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4조제7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제7항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기 만료전이라도” 를 “임기만료 전이라도” 로 한다.

제11조제2항 단서 중 “영 제113조의 3” 을 “영 제113조의3” 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전임계약직공무원이나 비전임계약직공무원” 을 “일반임기제공무원이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임계약직공무원은 4명이내, 비전임계약직공무원” 을 “일반임기제공무원은 4명 이내,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전임계약직공무원 및 비전임계약직공무원” 을 “일반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으로,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계약직공무원 관리규칙」” 을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인사 규칙」”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비전임계약직공무원” 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으로 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구성) ①·② (생략)</p> <p>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u>임명 또는 위촉</u>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p> <p>1. <u>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회의원 2명</u></p> <p>2.·3. (생략)</p> <p>④ 제3항제2호에 따른 공무원 중 부구청장, <u>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u>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도시계획관련 부서의 장을 포함할 수 있다.</p> <p>⑤ <u>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u></p>	<p>제4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임명하거나</u> ----- ----- -----.</p> <p>1. <u>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2명의 구의회 의원으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한 의원</u></p> <p style="padding-left: 2em;"><u>가. 위촉일 기준 직무 관련 구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을 제외한 그 밖의 의원</u></p> <p style="padding-left: 2em;"><u>나. 위촉일 기준 도시계획 및 건설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의원을 제외한 그 밖의 의원</u></p> <p>2.·3. (현행과 같음)</p> <p>④ ----- ----- <u>도시건설국장</u>----- ----- ----- -----.</p> <p>⑤ <u>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u></p>

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단서 신설>

⑥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위촉할 경우 2개 이상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거나 5개 이상의 다른 위원회(구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에 한함) 위원을 중복하여 활동하는 사람은 위촉을 제한한다.

<단서 신설>

⑦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을 위촉할 때 위원자격을 가진 후보인원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라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⑧ (생략)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 3. (생략)

제11조(회의록) ① (생략)

②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 제113조의2 및 영 제113조의3에 따라 공개 요청이 있는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
----- 3개 -----
----- 위원
으로 중복하여 활동하거나 관내 도시
계획관련분야의 종사자인 경우에는

-----.

다만, 공모를 통하여 다른 지역 도시계획관련분야 종사자의 위촉이 곤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삭제>

⑦ (현행 제8항과 같음)

제8조(위원의 해촉) -----

----- 임기만료 전이라도 -----
-----.

1. ~ 3. (현행과 같음)

제11조(회의록) ① (현행과 같음)

② -----
----- 영 제113
조의3-----

경우에는 심의 종결 후 30일(단, 심사
보류된 안건의 경우 6개월)이 경과
한 날부터 공개한다.

③ (생략)

제15조(기획단의 구성) ① (생략)

② 단장 및 연구위원은 토지이용,
주택 등 도시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구 소속
일반직공무원 또는 전임계약직공무원
이나 비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임계약직공무원은
4명 이내,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은
2명 이내로 한다.

④ (생략)

제17조(임용 및 복무 등) ① 제15조

제2항에 따른 단장 및 연구위원 중
전임계약직공무원 및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
계약직공무원 규정」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계약직공무원 관리규칙」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기획단의 비전임계약직공무원에
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기획단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일반임기제공무원
이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③ ----- 일반임기제공무원은
4명 이내,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임용 및 복무 등) ① -----

일반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지방
공무원 임용령」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인사 규칙」-----
-----.

②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